

노무비닷컴계좌 개설 및 지급이체서비스 이용 신청서

1. 신청기업정보

기업명			사업자번호	
주소				
기업 담당자	부서		성명	
	TEL		FAX	

2. 서비스 신청 계좌

계좌번호	예금주

- ※ 노무비닷컴계좌 개설 후 서비스 신청 계좌번호 기입
- ※ 하도급협력대금통장(노무비닷컴)_01-00225-0004-01계좌 개설

3. 원청기업 정보

원청기업 사업자번호	원청기업명	외담대 이용여부
		Y / N

- ※ 외담대 이용기업의 경우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외담대 약정을 해야 합니다.

4. 유의사항

- 지급이체 서비스는 나이스디앤알(주)와 은행간에 체결한 노무비지급 업무제휴협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.
- 지급이체 서비스는 노무비닷컴 홈페이지를 통한 이체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되며, 은행은 하도급관리시스템으로부터 이체 의뢰받은 내용 대로 신청 계좌의 지급가능 잔액 범위 내에서 이체합니다.
- 신청계좌의 지급이체는 하도급협력대금통장(노무비닷컴)을 통한 이체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, 창구·인터넷/스마트폰/폰뱅킹·CD/ATM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.
- 은행은 본 서비스의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기관 및 신청기관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, 폭동, 소요, 법령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및 금융당국의 정책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
 -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 -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기관 및 신청기관이 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동요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, 기타의 사고로 협약기관 및 신청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
 - 협약기관 및 은행이 직접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제 3자에 의한 전산통신망의 무단 침입에 의한 해킹, 시스템파괴,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
 - 기타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 고의,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
- 지급이체서비스는 은행의 제규정 및 거래약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이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.
 - 지급요청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지급이체 의뢰금액보다 부족한 때
 - 이체대상 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때
 - 이체대상 예금계좌가 입금정지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
 - 통신기기 및 회선의 장애, 전산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체처리를 할 수 없을 때
 - 지급요청계좌에 관하여 압류, 가압류등 인출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
 - 입금 또는 출금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예금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
 - 입금 및 출금계좌에 대하여 법적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
- 기타 유의사항은 “하도급협력대금통장” 특약 및 상품설명서와 원화평뱅킹서비스계약에 따릅니다.

위와 같이 노무비닷컴 계좌의 지급이체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청구서류	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공통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주주명부대표자 신청 시: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대리인 신청 시: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법인인감 및 통장도장
	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(※대리인 신청불가)

년 월 일

(신청인) 신청기업명 :

(인)

